

수원 권선지구 비아트리플 웨스트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공고

- ※ 입찰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기간 내 미계약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외 없이 입찰보증금이 당사에 귀속되므로 현장답사, 지구단위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세부내역 및 관련 시행지침, 도면 등 비아트리플 홈페이지에 첨부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토지

◆ 공급대상토지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50번지 외 4필지(근린생활시설용지 G1)

필지	지번	면적(m ²)	공급예정금액 (단위:천원)	입찰보증금	입찰방법	건축기본사항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 (층수)
1	1350	615.0	2,846,300	일금 일역원정 (필지당 정액제)	일반 경쟁 입찰	60% / 200% 이하	제 1 종 일반주거지역 (4 층이하)
2	1350-6	615.0	2,846,300				
3	1350-7	463.0	2,282,900				
4	1350-8	616.0	2,851,000				
5	1350-9	615.8	2,850,000				

※ 매수인은 공급대상 토지를 현재 상태로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 ※ 본 구역은 2014년 사업 준공되어 현재 상태로 공급하며, 공급대상토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등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건축허가 및 건축 후 훼손된 기반시설의 원상회복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으니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 전 반드시 각 필지 별 토지형상,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등 각종 제한사항을 현 공고문과 관계도면(지구단위계획, 각종 도면)등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일정 및 장소 (현장 입찰)

구 분	내 용	장 소
공급 공고	2023.05.17. (수) 10:00	비아트리플 홈페이지 (http://viatriple.com)
입찰보증금 납부	2023.06.27. (화) 15:00 이전 납부	무통장 입금
입찰신청	2023.06.27. (화) 12:00 ~ 15:00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50-5, 3F (주)트리플힐스 비아트리플 홍보관 (현장 입찰)
개찰 및 낙찰자 발표	2023.06.27. (화) 15:30 이후	
계약 체결	2023.06.29. (목) ~ 06.30.(금) 10:00 ~ 16:00	

※ 용지 공급업무 등의 변경 사유로 공급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아트리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3. 신청 자격

◆ 일반 실수요자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 1인당 신청가능 필지 수 제한 없음 [단, 동일인(법인)이 1필지에 2회 이상 중복신청 불가]

4. 입찰 방법

◆ 입찰 방법 : 최고가 경쟁 입찰

- 1) 2023. 06. 27. 15시 이전 필지별로 입찰보증금(일금 일억원정) 입금 후 입찰장소 입장고객에 한하여 입찰 가능합니다.
 - 2) 필지 별 당사 내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응찰자가 1인일 경우라도 내정가격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3)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추첨 진행 이후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다수 필지 입찰 시 각 필지 당 입찰보증금을 각각 입금하여야 합니다. (합산입금도 유효함)
 ※ 반드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현장에서 현금 및 수표를 수납하지 않습니다.

◆ 입찰서 제출

- 1) 신청은 현장 접수이며,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내에 입찰보증금 납부,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유효합니다. 입찰 신청 제출한 후에는 신청의 변경,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 2) 1인이 복수의 필지에 입찰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필지 수만큼 입금 후 입찰장소에 내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3)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인 여부는 주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 4) 법인 신청자의 경우 신청 시 법인의 대표자를 표기하여야 하며, 법인 신청자의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표기하여야 합니다.
- 5)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 신청 가능하나,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이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인은 각각 해당 필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입금 시 신청인(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입금하며,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대표를 지정하여 공동대표자 1인의 명의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7) 입찰 신청 시 명 의와 계약체결 시 명 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 입찰 구비서류

공 통	구 비 서 류	
	법 인	개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보증금 : 필지당 일금 일억원정 - 성명(법인명) 명기하여 입금 후 내방 • 입찰참가 신청서(현장 당일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 신분증 • 법인명의 통장 계좌번호 (입찰보증금 환불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신분증 • 본인 통장 계좌번호 (입찰보증금 환불용)

※ 대리인 입찰신청 시

- 공통서류 및 입찰자의 본인서류 외 위임장1부(입찰자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1부(용도: 위임용), 대리인 신분증

5. 입찰보증금의 납부·반환·귀속 등

◆ 입찰보증금 납부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 - 703 - 345669 (주)트리플힐스
-------	-----------------------------------

1) 입찰자는 현장마감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입금 및 현장 입찰을 완료하여야 하며, 납입계좌에 신청인(법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해야 하고, 신청접수 시 부여된 지정계좌 이외 타 계좌에 입금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동일인이 2필지 이상 입찰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 건 별로 계좌에 입금 또는 합산 입금하여야 하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입금 취소는 불가하며 입금 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 2필지 입찰의 경우 각각 5천만원씩 4회 입금 가능 또는 2억원 1회 입금 가능)

2) 입찰장은 입찰 당사자만 입장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입금 후 15시까지 입찰장에 도착하신 분은 모두 유효하고 15시 이후에 도착하신 분은 입찰장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3) 입찰보증금이 분할 입금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 입금된 금액만 합산하며 납부기한 이후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내 입금된 입찰보증금이 일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시간 이후 추가입금 되더라도 무효처리 됨)

4) 입찰보증금을 과·오납한 경우라도 즉시 반환되지 않으며, 개찰 이후 낙찰되지 않은 입찰보증금 반환기간 내에 반환처리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

1)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낙찰되지 않은 입찰참가자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개찰 이후, 입찰서 제출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은행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반환계좌 명의를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 계좌 오류 등으로 인한 반환 지급 오류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하여 신청자가 아닌 제3자로의 반환(채권양도)은 불가합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1) 낙찰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하고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2) 신청자격의 부적격자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은 당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해제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방법은 1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 중 당사 내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이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 입찰자가 1인일 경우라도 내정가격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2) 낙찰자는 상기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 및 분쟁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입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계약 체결 시 안내 사항

계약 기간	2023 .06. 29. (목) ~ 06. 30. (금) / 10:00 ~ 16:00 (12:00~13:00 제외)
계약 장소	(주)트리플힐스 비아트리플 분양홍보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50-5, 3F)

※ 계약금 입금계좌는 낙찰자 안내문을 통하여 안내하며, 계약금 및 잔금은 반드시 추후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공 통	계약자 본인	
	법 인	개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금 납부영수증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액) 본인(대표자) 신분증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이하 "자금조달계획서") 전자수입인지(인지세납부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 1부 -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 대리인 계약체결 시 : 공통서류 및 계약자 본인서류 외 위임장1부(계약자인감날인), 인감증명서1부(용도: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 대리인 신분증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공동명의로의 경우 공동명의로자 전원 제출)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신청인은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토지 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 계획서」제출 (수도권 경우 1억원 이상)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2.28.)에 따라 단일 필지 1억원 이상의 토지, 혹은 연접 토지 가액 합계 1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기에, 해당하는 매수자는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 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금납부 조건

계약금(10%)	잔 금(90%)
계약 시	2023 .09. 14. (목)

※ 약정대금 납부는 용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납기일에 맞추어 해당 납부계좌로 입금(계약자 명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대상토지는 금융기관사정(SPC법인개설 등) 및 기타사정으로 인한 사유 발생 시 동일 계약조건으로 잔금납부 시 1회 한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함. (명의변경 사유 발생 시 당사와 협의 후 진행함.)

◆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 1) 별도의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약정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초과된 연체일수에 연 10%의 이율이 적용된 지연손해금이 부과 되오니 유의바랍니다.
- 3) 이자 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4) 매수인이 납부하는 약정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지연손해금, 원금 순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토지사용 가능 시기

잔금 납부 즉시

- 1) 토지분양대금 완납 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준공 완료로 현재 상태의 매매 조건입니다.
 - 2) 소유권 이전은 토지분양 대금완납 후 가능하며, 계약자의 신청에 의거 주식회사 트리플힐스가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하되, 인지세납부 등 부동산 거래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및 향후 건축을 위한 측량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수원 권선지구는 준공된 지구로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바, 당사에서는 별도로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가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분양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5) 본 공급대상토지에는 현재 담보신탁 설정되어 있으며 잔금 납부 시 말소됩니다.
- ※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신청 및 교부에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잔금 10일전에 당사로 잔금일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 1) 취득세는 공급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토지의 최종잔금 납부약정일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급대금 완납일 이후 매입토지의 관리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 세금안내는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가 개략적 내용만 정리한 것이며, 세금관련 법령은 수시 변동되므로 매수인 본인이 관계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문의 등을 통해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1) 신청자는 신청 전에 입찰공고문, 유의사항,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 관계도면,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 등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처리하여야 하므로 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2) 현재 공급 대상토지에 지정된 수원 도시관리계획(권선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 주민제안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은 불가 합니다.
- 3) 매입토지는 투기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매수자는 매입토지를 지정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4)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숙지하신 후 공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6)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반의 제거, 법면상태, 지반상태 등의 토지 제약요인이 감안되어 산정되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대상토지의 장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7) 건물을 신축할 경우 매수자의 비용부담으로 경계복원 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 통신, 가스 등 간선시설의 연결설치는 매수인이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로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인입설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 하여야하고, 굴착공사 시 해당구간 관리주체인 지자체로부터 점용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8) 매수인은 해당 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확인·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이외에 관계법령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9)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 건축물 고저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 거주민 및 종교단체 등 각종 민원은 매수인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10)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및 건축폐기물 등은 매수인이 처리하여야 하며, 인접필지로 토사, 건축폐기물 등을 무단 적치(투기)시 당사 또는 해당 필지소유(예정)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매수인은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필지 주변 환경 및 현재 상·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공상태를 인지하여 하며, 기설치된 지상 노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필지 조성구배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12) 구역 내·외 학교시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필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포함될 수 있어 동 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제한을 추가로 적용 받아야 하므로 매수인은 이 점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13) 본 사업지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 지역이며 그에 따른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4)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댐 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도로, 공원 등 기부 채납 시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관련 유의사항

- 1) 매수인은 수원 권선지구(이하 '권선지구'라 함)의 각종 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기타 관계 기관 협의의견(승인조건)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관계법령(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수원시 각종 조례 등)을 확인·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관계 법령의 제·개정, 권선지구 관련계획의 변경 등으로 관련 내용이 강화될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하며, 향후 동 내용에 따른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 조건 변경 또는 해제요구 등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수원시 각종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국가정책,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문화재 시굴(발굴)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당해 획지에 대한 계획(형상, 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내용에 대해서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 4) 학교시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획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동 법에 의한 '금지행위'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법률내용을 확인·숙지하신 후 공급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6) 동 획지 면적은 확정측량 면적으로, 매수인은 건축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 수립 시 매수인 부담으로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고 동 면적으로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면적이 변경됨으로 인해 건폐율, 용적률 등이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설계 및 인허가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매수인의 사업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가감속 차로 설치, 차로 및 완충녹지 등 기부채납으로 인해 대지면적 이 감소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와 관련된 공사비용 청구 및 대지면적 감소에 따른 금액정산을 당사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 8) 권선지구 내 통학구역은 관할 지자체의 관련 행정 및 학생배치 계획에 따릅니다.

◆ 공사관련 유의사항

- 1) 동 획지의 접근도로는 대·내외 여건(보상, 합동점검 등)에 따라 개통시기가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매수인은 동 획지의 조성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 옹벽, 외부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과 입지여건(주변 상황) 및 토지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수인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매수인의 자체사업으로 인한 암반의 제거, 법면 조성·제거, 말뚝시공, 진·출입로 개설 등은 매수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3) 매수인은 사업계획에 따른 권선지구 내 기반시설(상수, 우수, 오수)사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당사, 수원시장(기반시설 관리권자)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수립 시 권선지구 관련계획 및 도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 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4) 간선시설(전기, 통신, 가스, 집단에너지 등)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각 설치주체와 인입방법 등을 협의하고 매수인의 부담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급 전까지 임시시설로 대체될 수 있으며 설치주체의 사정에 따라 공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매수인은 기반시설 및 간선시설 인입을 위한 굴착공사 전 인수인계 완료여부에 따른 해당시설 관리기관(수원시장)과 협의하고 기반시설(상수, 우수, 오수) 접합 시 관리기관이 직접 확인(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입관로 연결 후 시공사진(원·근경) 촬영 및 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을 득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준공 또는 사용 전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6) 매수인이 건축공사 중 동 획지 주변 기반시설(도로, 오수, 우수, 상수 등)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협의 후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지하매설물 CCTV촬영)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전 원상복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7)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관할 지자체와 공동으로 공사장 주변환경 시설(세륜·세차시설, 살수차량, 공사용 가설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8) 기반시설(상·하수도 등) 준공(사용승인 등) 전에 발생하는 상·하수 등의 처리와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전기, 가스, 통신 등 인입관로 시설은 매수인 부담으로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 9) 가로등, 공원등, 보도육교, 정압기 등 공공시설은 공익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예정)한 시설물로 매수인은 동 내용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동 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10) 매수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동 획지 밖에 교통신호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매수인 부담으로 동 시설 및 시스템(실시간 신호제어)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11)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집단에너지 등의 완공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매수인은 해당 공사 준공 전에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12)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공사 등 당해 획지를 사용함에 건축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민원, 환경관련 문제(비산먼지, 소음 등)를 처리하고, 건축공사 중 사용하는 권선지구 내 도로를 유지·관리(살수차 운행 등)하여야 하며, 주변교통 및 보행자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13) 건축공사 지하터파기 시 인접도로에 매설된 관로의 침하 및 변형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하 터파기용 가시설 설치 필요시 관리기관과 반드시 협의 후 동 획지에 접하는 도로(지상 및 지중포함), 녹지 등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흙막이 가시설 공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어스앵커 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14) 매수인은 우기 시 동 획지 내 토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시설(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 획지는 미성토 반영에 따라 물고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상황을 수인하여야 합니다.
- 15) 매수인은 건축공사 시 발생하는 터파기 잔토, 건설폐자재 및 각종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하며, 동 획지 외 부지에는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분양을 위한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적치) 및 자재적치차량 등의 주차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 16) 해당부지의 계획고 이하 지하 터파기시 연암 이상의 암 발생할 경우 추가 절취비용은 매수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17) 터파기 및 토공사 시행 시 대지조성공사 시행 전에 매립되어 있던 매립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지반고 하부에서 확인된 매립폐기물 발생 시 필지 현장보존 후 당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한 토지사용시기 지연 등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수인하여야 합니다.
- 18) 매수인은 동 건축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부과되는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용지공급 관련 문의사항

- 공급대상 토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용지공급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한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토지	입찰 및 용지공급 문의
근린생활시설용지 G1	주식회사 트리플힐스 031-223-8250

2023. 05. 17.

주 식 회 사 트 리 플 힐 스